### 아름다운 이 수 행복한 시 교

제2021-11호 2021년 1월 18일(월)





보

## 시 정 지 표

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

■ 발행인: 여수시장 ■ 발행소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8 FAX) 659-5803

고 시

o 여수시 고시 제2021-29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

3

공 고

0 여수시 공고	제2021-161호	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(안) 열람 공고	4
o 여수시 공고	제2021-165호	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	6
o 여수시 공고	제2021-174호	「여수시 주차장 조례」 일부 개정 입법예고(2차)	7
<ul><li>여수시 공고</li></ul>	제2021-175호	재결사정본 공시송달 공고(광양CC-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시업 2차, 20수용0519회	23

기 타

회				
람				

여수시 고시 제2021 - 29호

# 공유수면 점용 ·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· 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.

점용·사용 (승인)번호	준공검/	준공검사 신청자 점용·사용장소 허가면적 (㎡)		준공검사 확 인 증	공사내용	
(허가(승인)일)	주 소	성명		(111)	교부일자	
2020-84 (2020.09.28.)	여수시 시청로1 (학동)	여수시장 (섬자원개발과)	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1386-9번지 지선	945.7	2021. 1. 18.	화양면 서연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

2021 1. 18.

여 수 시 장

#### 여수시 공고 제2021 - 161호

##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(안) 열람 공고

국토교통부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(안)이 송부되어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(안)에 대하여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월 18일

## 여 수 시 장

#### 1. 산업단지의 명칭・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가. 명 칭 : 여수국가산업단지

나. 위 치 :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외 4개동 및 일부해면

다. 면 적: 51,228,685 m²

구 분	합 계			합계 기존단지		단지	확장단지		비
7 正	합계	육지부	해면부	육지부	해면부	육지부	해면부	고	
면적 (천m²)	51,228.6	35,632.2	15,596.4	28,278.2	11,365.5	7,354.0	4,230.9		

#### 2.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(변경)

가. 기존단지(변경없음)

- 1) 여수국가산업단지 : 환경부, 해양수산부, 전라남도, 한국수자원공사, 여수시, 기타 실수요기업체
- 2) 여수국가산업단지 중 대체녹지조성 : 한화케미칼주식회사, 롯데케미칼주식회사, 여천 NCC주식회사, 대림산업주식회사, GS칼텍스주식회사, KPX라이프사이언스주식회사
- 3) 여수국가산업단지 중 중흥·삼동지구 조성 : 여수시, 실수요자(이일산업주식회사)

#### 나. 확장단지(변경)

- 기정 : 한국수자원공사, 한화케미컬주식회사

- 변경 : 한국수자원공사, 한화케미칼주식회사, 한화에너지주식회사

#### 3.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(변경)

가. 주요유치업종(변경)

○ 기존단지 :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(조립금속제품,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, 기타 전기 및 전기변환장치, 가구 및 기타 제품, 화합물 및 화학제품)

○ 확장단지 : (기정)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(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 제조업)

(변경)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(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 제조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)

#### 나. 업종배치계획(변경)

#### ○ 확장단지

O 뒤 어 조	면 2	면 적(㎡)		
유 치 업 종	기 정	변 경	비고	
총 계	3,752,870.9	3,752,870.9		
석유화학 및 연관사업 (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 제조업)	3,752,870.9	3,719,213.4		
전기·가스·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	-	33,657.5	업종변경 (화치동 1469-2)	

#### 4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(변경)

- 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- 나. 주요기반시설계획(변경)
  - 1) 전력계획(변경)

구 분	면적(㎡)	위 치	иа
변전소	7,470	여수시 화치동 1339	
열병합발전소	82,698	여수시 화치동 1461	전력시설:25만(kw) 열공급시설:276(Gcal/h)
집단에너지공급시설	33,65735	여수시 화치동 1469-2	열공급시설:332.1(Gcal/h) 신규지정

- 5. 수용 · 사용할 토지 ·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· 주소(변경없음)
- 6. 열람기간 : 2021. 1. 18. ~ 2021. 2. 1. (15일간)

#### 7. 관계도서 열람방법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여수시청(도시계획과, TEL : 061-659-401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. (관계도서 게재생략)

## 여수시 공고 제2021-165호

## 공인 등록 공고

여수시 공인 조례 제6조, 제7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. 18.

## 여 수 시 장

1. 등록 · 폐기일 : 2021. 1. 15.(금)

2. 등록 · 폐기사유

- 미등록공인 사용에 따른 처리

-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폐지

3. 등록 · 공인 내역

구분 (관리번호)	공 인 명	인 영	관리부서	등록·폐기 사유
등록 (1699)	여천동일상령+1출 <sub>급</sub> 원인		여천동	미등록 공인 사용에 따른 처리
폐기 (1699)	여천동일상령+1출L원인		여천동	미등록 공인 사용에 따른 처리
폐기 (1393)	야수사공유토자분할위원회인	CHALLES CHEST CHEST CONTROL OF A LINE CONTROL OF	민원지적과	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폐지

# 공 고

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. 18.

# 여 수 시 장

# 「여수시 주차장 조례」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#### 가. 거주자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공유를 위한 근거 마련

- 1)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 유주차장 운영을 통하여 관광지 주차난 해결
- 2) 주차장 공유로 발생한 주차요금 <u>수입금의 일부(40% 범위 내)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</u>하여 주차장 공유 참여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만, 월 주차요금의 100분의 150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

### 나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

공동주택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대부분 세대에서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는 세대도 다수로, 공동주택의 주차난이 인근주택 및 상가지역 주차난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85㎡(이하, 초과)를 구분하지 않고 세대별 1.3대 기준으로 강화, 단, 주차장 출입구 수 및 폭이 제한되어 있는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가구 주택의 경우, 개정 전의 설치기준 적용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유주차구획 운영(제13조의2 관련 신설)
  - 1) 시장은 거주자 사업자전용주차구획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
  - 2) 시장은 공유주차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·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아 공유주차구획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공유주차구획 주차요금 수입금의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제공자가 납부한 주차구획 월 이용요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3) 시장은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4)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구획의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.
  - 5)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나.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(별표 10의 제3호 관련)

7 8	개정	! 전	개정	후
구 분	85㎡이하 85㎡초과		85㎡이하	85㎡초과
다가구 주택, 공동주택 (원룸형 주택 제외)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	85㎡당 1대	70㎡당 1대	65㎡당 1대 단, 주차장 출입구 되어 있는 기존의 내 다가구 주택의 85㎡이하는 85㎡ 85㎡초과는 70㎡	지구단위계획구역 경우, <b>'당 1대</b>

3. 입법예고기간 : 2021. 1. 18. ~ 2020. 1. 24.(7일간)

**4. 제정조례안** : 별첨

### 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교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  - 주 소 : 우)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
  - 받는사람 : 여수시장(교통과장)
  - 전 화: 061-659-4148 팩스: 061-659-5837
  - 이 메일: zzang3236@korea.kr
- 나. **의견제출 방법** : 직접방문, 서면, 팩스(FAX), 이메일(E-Mail)

#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여수시 주차장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	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항목별 내용	찬성	반대	의 선(작표)	기다 심고사영

##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2(공유주차구획 운영) ① 시장은 거주자・사업자전용주차구획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
  - ② 시장은 공유주차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·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아 공유주차구획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공유주차구획 주차요금 수입금의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급할수 있는 인센티브는 제공자가 납부한 주차구획 월 이용요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③ 시장은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구획의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.
  - ⑤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별표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(별표 10) <u>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</u>(제17조 관련)

	- 1
시 설 물	설 치 기 준
1. 제1종 근린생활시설[「건축법 시행령」별 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(공중화장실, 대 피소,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)은 제외한 다], 제2종 근린생활시설	○ 시설면적 180㎡당 1대(시설면적/135㎡)
2. 숙박시설	○ 시설면적 120㎡당 1대(시설면적/120㎡) ○ 생활숙박시설은 100㎡당 1대 또는 호실 당 0.7대 중 큰 대수 적용
3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외한다)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	○ 전용면적 65㎡당 1대 이상으로 설치하되 세대 또는 호실(업무시설 중 오피스텔)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주차장 출입구 수 및 폭이 제한되어 있는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가구 주택의 경우, 85㎡이하는 85㎡당 1대, 85㎡초과는 70㎡당 1대로 한다.
4.「주택법 시행령」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	○ 세대당 주차대수가 0.9대(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.75대)이상
5. 수련시설, 공장(아파트형은 제외한다), 발전 시설	○ 시설면적 350㎡당 1대(시설면적/350㎡)

비고 : 위 내용의 해석 관해서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공유주차구획 운영) (신설)	제13조의2(공유주차구획 운영) ① 시장은 거주자·사업자전용주차구획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주차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·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아 공유주차구획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공유주차구획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공유주차구획 주차요금 수입금의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수 있으며, 이 경우 지급할수 있는 인센티브는 제공자가 납부한 주차구획월이용요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수없다. ③ 시장은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. ④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구획의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. ⑤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및 그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현	행	7H	정 안
(별표 10) 부설주차장의 설	설치기준(제17조 관린)	(별표 10) 부설주차장의 설	설치기준(제17조 관린)
시 설 물	설치기준	시 설 물	설 치 기 준
1. 제1종 근린생활시설[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(공중화장실, 대피소,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)은 제외한다], 제2종 근린생활시설	○ 시설면적 180㎡당 1대(시설면적 /180㎡)	1, 제1종 근린생활시설[「건축법 시 행령」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 목(공중화장실, 대피소, 지역이동 센터는 제외한다)은 제외한다], 제2종 근린생활시설	O 좌 동
2. 숙박시설	○ 시설면적 120㎡당 1대(시설면적 /120㎡) ○ 생활숙박사설은 100㎡당 1대 또는 호실 당 0,7대 중 큰 대수 적용	2. 숙박시설	O 좌 동
3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제10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은 제외한다), 업무시설 중 오 피스텔	주택의 규모별 주차장 설치기준 (건용면적) (대/㎡) 85㎡ 이하 1/85 85㎡ 초과 1/70 이 위 표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, 세대 또는 호실(업무시설 중 오피스텔)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	3, 다기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제10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은 제외한다), 업무시설 중 오 피스텔	○ 전용면적 65㎡당 1대 이상으로 설치하되 세대 또는 호실(업무시설 중 오피스텔)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주차장 출입구 수 및 폭이 제한되어 있는 기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다가구 주택의 경우, 85㎡이하는 85㎡당 1대, 85㎡ 초과는 70㎡당 1대로 한다.
4,「주택법 시행령」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	O 세대당 주차대수가 0,9대(세대당 건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,75대)이상	4 「주택법 시행령」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	ㅇ 좌 동
5, 수련시설, 공장(아파트형은 제 외한다), 발전시설	○ 시설면적 350㎡당 1대(시설면적/ 350㎡)	5. 수련시설, 공장(아파트형은 제 외한다), 발전시설	ㅇ 좌 동

## 여수시 주차장 조례

제 정 1998. 4. 4 조례 제 83호개 정 2000. 1. 8 조례 제 261호 (일부개정) 2005.03.17 조례 제 476호 (일부개정) 2008.05.20 조례 제 660호 (일부개정) 2010.11.22 조례 제 778호 (일부개정) 2011.12.31 조례 제 841호 (일부개정) 2011.12.31 조례 제 841호 (일부개정) 2011.12.31 조례 제 849호 (일부개정) 2012.06.29 조례 제 882호 (일부개정) 2015.03.20 조례 제1074호 (전부개정) 2016.06.08 조례 제1199호 (일부개정) 2017.07.07 조례 제1280호 (일부개정) 2017.12.29 조례 제1319호 (일부개정) 2019.03.14 조례 제1390호

#### 제1장 총칙

- □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주차장법」</u>, <u>「주차장법 시행령」</u> 및 <u>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</u>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□ 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여수시(이하 "시"라 한다)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□ 제3조(주차장 수급 실태조사) ① 「<u>주차장법 시행규칙」</u>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 차장 실태조사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실태조사 대상
- 가.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. 다만,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
- 나.「도로교통법」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. 다만, 이륜자동차는 제외
- 2. 실태조사 시기 :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로 선정하며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함
- 3. 실태조사 내용
- 가. 주차장의 형태, 소재지, 규모,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
- 나. 시간대별로 주차차종, 주차위치, 주차대수, 주차장 회전율,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
- 다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- 4. 실태조사 방법
- 가.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
- 나. 주차 수요조사는 주간·야간, 평일·주말, 적법·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
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③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- ④ 주차장 실태조사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[본 조 전부개정 2020. 5. 27.]

- □ 제4조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) ① 「<u>주차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</u>에서 "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"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.
- ②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기준으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건설 등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.
- □ 제5조(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) 시는 시민이 자기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행정적·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□ 제6조(주차요금 등)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"공영주차장"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. 다만, 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%의 범위에서 할증 또는 할인(할증액 또는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)할 수 있다.
- ② 「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「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」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국세청 「모범납세자 관리규정」제3조제1항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로서 우수 또는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스티커교 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9.>
-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배로 한다.
-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(시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가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자동차 및 경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주차요금 경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경감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.
- 1. <u>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</u>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15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의 자동차 : 주차요금의 50퍼센트
- 2. <u>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</u>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동차 : 주차요금의 50퍼센 트
- 3. <u>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</u>제2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자동차 : 주차요금의 50퍼센트
- 4. <u>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</u>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해당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: 주 차요금의 50퍼센트
- 5. 경형자동차 : 주차요금의 60퍼센트
- 6. 10부제 운행 또는 승용차 함께 타기(3인 이상)에 참여 중인 자동차 : 주차요금의 20퍼센트
- 7. <u>「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제12조제2항</u>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: 주차요금의 50퍼센트
- 8. <u>「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」</u>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'재단법인 사 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'에서 발급받은 장기기증 등록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: 주차요금의 50퍼센트
- 9. <u>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</u>제2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 : 주차요금의 50퍼센 트
- $10.\overline{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}$ 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2x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: 주 차요금의 50퍼센트
- ⑤ <삭제 2017. 7. 7.>
- ⑥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며, 주차요금표를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⑦ 월 통합 정기주차권(소형기준) 이용자는 한달 동안 여수시 관내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. 월 통합 정기주차권은 130,000원으로 하며 대형은 제외한다. <신설 2017. 12. 29.>
- ® 「모자보건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있는 세대나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인 세대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차량 중 1대를 선정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

- 수 있다. 다만,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, 신청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이용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29. 개정 2020. 5. 27.>
- □ 제6조의2(행사 등 공영주차장 무료개방) ① 전국단위 행사·축제,시 대표축제에 한정하여 행사주체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행사구역 내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.이경우 행사주체는 무료 개방에 따른 주차장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.
- ② 설 및 추석 명절에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. 다만,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료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는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이 불가하며, 행사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문차량을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될 주차면 수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.[본조 신설 2020. 5. 27.]
- □ 제7조(주차장의 이용 거부 금지)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<u>법 제10조의2제1항</u>,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. <개정 2020. 5. 27.>
- 1.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
- 2.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
- 3. 공영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4. 공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
- 5. 공영주차장 안에서 방문판매, 노점상, 홍보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
- 6. 공영주차장 안에 건축자재, 농기계류,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경우
- 7. 공영주차장 안에 자동차를 한 달 이상 방치하는 경우 <개정 2020. 5. 27.>
- 8. 그 밖에 주차장 운영·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<신설 2020. 5. 27.>
- ②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에는 <u>법 제8조의2제2항</u> 및 <u>제15조제2항</u>에 따라 강제 견인이나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5. 27.>[본조 제목개정 2020. 5. 27.]
- □ 제8조(주차장의 표지) ①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노외주차장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1.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
- 2.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
- 3. 주차장의 이용시간
- 4. 기타 필요한 사항(신고번호, 관리자의 주소·성명, 주차제한 자동차 등)
- ③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노외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라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표지를 제외한 공영주차장 표지 등의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- □ 제9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<u>법 제8조제1항</u> 및 <u>제13조제2항</u>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
- 2.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
-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(이하 "관리수탁자"라 한다)를 수시 지도·감독하게 하여야 하며,

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.

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

- □ 제10조(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환불기준)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1.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
- 2.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
- 3.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
- ② 정기주차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: 별표 1의 1일 최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용 기간 동안의 주차요금이 정기주차권 요금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환불
- 2.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: 정기주차권 요금에서 해당 월 미사용 일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
- □ 제11조(이용제한)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, 제한 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5. 27.>
- □ 제12조(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) ①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여성 및 교통약자(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, 그 규격과 내용에 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. <개정 2020. 5. 27.>
- ② 시장은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(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)에 별표 5의 규격과 내용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 4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27.>
- ③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. <신설 2020. 5. 27.>
- 1.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
- 2.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장관리시설과 근접하여 접근성,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
- 3. CCTV로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
- 4. 주차장 출입구나 주차장관리시설 또는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[본조 제목개정 2020. 5. 27.]
- □ 제13조(거주자ㆍ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) [제목개정 2017. 7. 7.]
- ① 시장은 <u>법 제10조제1항</u>제3호, <u>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</u>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인근 주민 등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자동차(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거주자·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7.>
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거주자·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단, 「여객자 동차 운수사업법」제5조제1항에 따른 차고 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5항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여 야 하는 자동차, 16인승 이상의 승합차, 버스 및 2.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7. 7. 7.>
- 1. 거주자·사업자전용주차구획 인근 주민의 자동차 <개정 2017. 7. 7.>
- 2. 거주자·사업자전용주차구획 인근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 <개정 2017. 7. 7.>
- ③ 거주자·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별표 6과 같으며, 해당 요금의 환불에 관하여는 <u>제10</u> 조제2항에 따른 정기주차권의 환불 기준을 준용한다. <개정 2017. 7. 7.>
- ④ 시장은 거주자·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별표 7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, 거주자·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자동차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 및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- ⑤ 인근 주민·사업자·상근자의 구체적 범위, 거주자·사업자우선주차구획의 사용신청 및 선정 절차, 그 밖에 거주자·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7. 7.>

- 제13조의2(공유주차구획 운영) ① 시장은 거주자·사업자전용주차구획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
  - ② 시장은 공유주차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·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아 공유주차구획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공유주차구획 주차요금 수입금의 100분의 40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제공자가 납부한 주차구획 월 이용요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.
  - ③ 시장은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구획의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.
  - ⑤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□ 제14조(하역 주차구간의 설치) ①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(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)는 <u>법 제7조제4항</u>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별표 3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1. 목적
- 2. 운영구역
- 3. 운영시간
- 4. 이용가능한 자동차
- 5.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
- ③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화물의 하역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시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의 하역주차구획에는 20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다.
- □ 제15조(주차방법 등) ①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,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27.>
-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27.>
- □ 제16조(노상·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) ① <u>시행규칙 제4조제1항</u>제8호나목에서 "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"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. <개정 2020. 5. 27.>
-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"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.
-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바닥면 표시는 별표 9에 따른다. <개정 2017. 12. 29.>
- □ 제16조의2(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) ① <u>법 제12조의3</u>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택지개발사업
- 2. 산업단지개발사업
- 3. 도시재개발사업
- 4. 도시개발사업
- 5. 주택지조성사업
-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: <u>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</u>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. 다만, 그 면적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.2퍼센트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.
- 2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: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

- 1.2퍼센트 이상의 면적[본조 신설 2019. 3. 14.]
- □ 제16조의3(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구조) ① <u>시행규칙 제6조제4항</u>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<u>「건축법 시</u>행령」별표 1에 따른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.
- ② <u>시행규칙 제6조제5항</u>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<u>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</u>에 따른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전시장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하며,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.[본조 신설 2020. 5. 27.]

#### 제3장 부설주차장

- □ 제17조(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 ① 「<u>주차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제2항</u>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. 다만, 도서지역의 경우 별표 11과 같다.
- ② 법 제19조 제1항에서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 36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하며,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별표 10을 따르되 그 밖의 시설물은 <u>영 제6조</u> 제1항 별표1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29.>
-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, 기계식주차방식일 때에는 「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며,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이 한다. <신설 2017. 12. 29.>
- □ 제18조(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)<u>법 제19조제4항</u>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 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를 말한다.
- □ 제19조(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) ① <u>법 제19조제6항</u>에 따라 시장이 주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의 양식은 별표 13과 같으며, 무상사용권 발급시<u>제14호 서식</u>의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29.>
- ② <u>영 제10조제1항</u>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해당 급지에 따른 소형 자동차의 주·야간 월 정기주차요금(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)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며, 해당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.
- □ 제20조(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) ① <u>법 제19조제5항</u>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<개정 2020. 5. 27.>
- 2.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(토지가 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)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<개정 2020. 5. 27.>
- 3. 토지가액은 <u>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8항</u>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산정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제3조</u>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 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27.>
- 4. 건축비는 당해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(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)에 의하되, 당해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<u>「한국은행법」제86조</u>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·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하여 산정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법 제19조제6항</u>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.
- 1.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법 제19조제1항의 시설물 부지(이하 "시설물 부지"라 한다)의 주차구획 1면당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 <개정 2020. 5. 27.>

- 2.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 부지의 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<개정 2020. 5. 27.>
- 3. 제곱미터당 토지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건축물부지의 면적(제곱미터)으로 나누어 산정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건축물부지의 면적(제곱미터)으로 나누어 산정한다. <개정 2020. 5. 27.>
- 4.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. 다만,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. <개정 2020. 5. 27.>
- □ 제21조(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) ① <u>영 제6조제1항</u>에 따른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서 "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"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.
-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바닥면 표시는 별표 9에 따른다. <개정 2017. 12. 29.>
- 제21조의2(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)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(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 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0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.[본조 신설 2020. 5. 27.]

#### 제4장 보조금의 지급

- □ 제22조(보조의 대상) ① 시장은 <u>법 제21조의2제6항</u>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 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1. 기존의 건축물 중 담장 또는 대문을 개조·철거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. <개정 2019. 3. 14.>
- 2.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
- 3.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. 단,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의 수용능력이 평면식 주차장의 3배이상으로 서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,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□ 제23조(보조의 방법) ① <u>법 제21조의2제6항</u>에 따른 보조금(이하 "보조금"이라 한다)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□ 제24조(용도 제한)<u>제22조제1항</u> 각 호의 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은 설치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- 1. 제22조제1항제1호의 자가 설치한 주차장 : 5년
- 2. 제22조제1항제2호의 자가 설치한 부설주차장 : 5년
- 3. 제22조제1항제3호의 자가 설치한 주차전용건축물 : 20년
- □ 제25조(보조금의 반환)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1. 주차장을 조성한 후 M24조에 따른 용도 제한 기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 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
- 2.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<u>법 제19조</u>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
- 3. 공사 완료 후 주차장에 임의로 시설물(대문, 울타리, 담장 등)을 설치한 경우

- 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
- ② 제22조제1항제1호의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, 제22조제1항제3호의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한 후 20년 이내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, 이에 관한 특약등기가 없을 때에는 당초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한다.
- ③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. 제5장 보칙
- □ 제26조(과징금 처분) ① 시장은 <u>법 제24조</u>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 위반행위의 종류, 과징금의 금액,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,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수령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.
- ②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「행정절차법」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.
- ③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□ 제2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2016. 6. 8. 조례 제1199호)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부설주차장 의 설치기준은 허가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세출) 회계의 세출대상은 「여수시 주차장 조례」제22조제1항 각 호와 같다.

부 칙 (2017. 7. 7. 조례 제1280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7조 별표 10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한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별표 10의 규정은 그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.

- 1. 건축법 제4조의 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
- 2.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- 3.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
- 4.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신청
- 5.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

부 칙 (2017. 12. 29. 조례 제1319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행위 신청(부칙 조례 제1280호의 각 호) 등을 한 경우 조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의 신설 규정은 그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 (2019. 3. 14. 조례 제1390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 면적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승인·인가·허가 등을 받았거나 승인·인가·허가 등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신설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행위 신청(부칙 조례 제1280호의 각 호) 등을 한 경우 조례 제17조 제1항 별표 10·별표 11의 신설 규정은 그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 (2020. 5. 27. 조례 제1520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행위 신청(부칙 조례 제1280호의 각 호) 등을 한 경우 조례 제17조제1항의 별표 10의 개정 규정은 그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.

# 공시송달공고

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「광양CC-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2차」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,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,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

2021. 1. 18.

# 여 수 시 장

- 1. 사 업 명: 광양CC-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2차
- 2. 사업의 위치 : 여수시 월내동, 상암동, 적량동, 중흥동 일원
- 3. 사업시행자 : 한국전력공사
- 4. 공고내용 : 재결서 정본 송달
- 5. 공고 기간 : 2021. 1. 18. ~ 2021. 2. 1.(15일)
- 6. 공시송달 대상자

일련 번호	성 명	송 달 주 소	사유
1	김태종	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0*	
2	미등기1	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30*, 10*-100*(여서동, 경남*차아파트)	
3	미등기2	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	
4	미등기3	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	
5	미등기4	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	
6	미등기5	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	T 1 12
7	성주배씨월내종친회	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	주소 및 거소 불명
8	월상새마을번영회	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1*, 20*동 C101*호(문정동, **하비오푸르지오)	
9	전윤악	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10*-1*, 10*-110*(용담동, **아파트)	
10	성주배씨월내종친회	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14*	
11	월상새마을번영회	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14*-*	
12	전윤악	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산3길 4*-1*	

13	전인숙	전라남도 여수시 양지6길 3*-*
14	전일권	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10*, 61*-60*(마곡동, **엠벨리6단지)
15	최말분	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56*
16	한맹자	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66*-2*
17	전수근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3*

## 7. 기 타

-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.
  -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: 여수시 지역경제과 (☎ 061-659-3611)